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장사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할 때 국가유공자등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221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유공자등의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무연고 시신 처리 전 확인할 국가유공자등 대상 구체화(안 제9조제3항 신설)

무연고 시신 처리 전 확인할 국가유공자등의 대상을 국가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체화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(無緣故 屍身) 등을 처리하기 전 확인하여야 할 국가유공자등은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유공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)

2. 특수임무유공자(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)

3. 5·18민주유공자(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)

4.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(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7조의3)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9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(無緣故 屍身) 등을 처리하기 전 확인하여야 할 국가유공자등은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국가유공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)</u> 2. <u>특수임무유공자(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)</u> 3. <u>5·18민주유공자(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)</u> 4. <u>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 지급대상자(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7조의3)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73